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7,769,304	13,733,079
일반회계		446,477,106	13,394,313
특별회계		11,292,198	338,766
기타특별회계		11,292,198	338,76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53,899	34,617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61,128	40,834
	건축진흥특별회계	639,000	19,1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77,700	14,33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2,834	7,285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7,303	4,71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410	1,902
	드림빌특별회계	1,872,695	56,18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56,019	43,6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68,210	116,04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53,20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